

# 사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(안) 심사보고

## 1. 심사경과

가 2006. 4. 18 : 사천시장 제출

나 2006. 4. 18 : 총무위원회 회부(의안번호 제20호)

다 2006. 4. 25 : 제10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  
의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(기획담당관 김영고)

### 가 제안이유

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### 나 주요내용

#### 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(안 제2조·제3조)

－ 구성 : 위원장(부시장) 포함 15인 이내

－ 임기 : 2년(연임 가능)

－ 기능

•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, 시기 등에 관한 사항심의

• 특수공시 선정 사항 심의

### 다 관계법령

■ 지방재정법

■ 지방재정법 시행령

■ 지방자치법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송군호)

-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대학교수, 시민단체 대표, 공무원, 관계 민간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지방재정 공시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정 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, 공시시기 등에 관한 사항과 특수 공시 선정사항을 심의 하도록 한 것으로,
- 검토의견으로는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 공시 심의회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코자 하는 취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사료됨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### 5. 토론요지 : 없음

###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## 7. 소수의견 : 없음